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99

제출년월일 : 97년 1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정이유

- 적의침투·도발이나 그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 통합방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용하는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협의회의 심의사항 명시
 - 취약지역 대비책
 - 통제구역 설정등
-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
 - 위원수 : 의장, 부의장포함 10~20인이내
 - 간사 : 3명(총무·민방위·심리전담당간사)
-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됨
 -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등 8개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반별 4인~9인으로 편성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 연간소요예산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 : 해당없음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제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육군 제3105부대 3대대장
3.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4.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6. 경찰서장
7. 교육장
8.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공보담당관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 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